

KCGS Report

제14권 9호 | 통권 제177호
2024. 9.



한국ESG기준원

KCGS Report 제14권 9호

발행일: 2024년 9월 30일

발행인: 심인숙

발행처: 한국ESG기준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TEL: 02-3775-3339 www.cgs.or.kr

제작: 경성문화사 02-786-2999

등록NO: 영등포, 라00532

※ 이 보고서의 견해 및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해당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ESG기준원에 귀속되며,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하거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상기 저작물을 무단 도용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해당 보고서 인용시 반드시 출처를 표시 바랍니다.

KCGS Report

제14권 9호 | 2024. 9.

● ESG 동향

산업별 사회 관련 리스크 관리 수준 분석 -안전보건, 인권, 불공정거래 리스크를 중심으로-	2
국내 상장기업의 감사 장기 재직 현황 분석	13

● Global News

1. 호주, 기업의 기후 공시 의무화 법안 통과	25
2. 영국 재무부 ESG 평가기관 규제 입법 예정 발표	27

산업별 사회 관련 리스크 관리 수준 분석 -안전보건, 인권, 불공정거래 리스크를 중심으로-

김예린*

- ▶ ESG 리스크 파악 및 관리와 그에 대한 공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 따라 기업은 고도화된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관련 내용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유가증권 상장기업 대상으로 사회책임경영 핵심 이슈 관련 리스크 중 안전보건, 인권, 불공정거래 리스크 관리 수준에 대해 산업별 분석하였음
- ▶ 산업에 따라 리스크 관리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일 산업 내에서도 리스크별 관리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 산업별 리스크 관리 수준과 기업의 중대성 평가 결과를 비교했을 때 중대 이슈로 선정한 리스크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관리를 수행하는 경향이 있음

들어가며

- 지난 2023년 6월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공표한 'IFRS S1 일반 요구사항'에 따르면 기업은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그에 대한 대응계획과 진척도를 공시해야 함¹⁾
 - 국내에서도 ISSB가 발표한 기준을 바탕으로 국내 상장기업 대상 ESG 공시기준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후 의무화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국내 상장기업들은 자사의 ESG 리스크 실태를 파악 및 관리하는 한편, 그에 대한 적극적인 공시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 본고에서는 2023년 기준 국내 상장기업의 공개정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ESG 리스크 관리 활동 중 사회 이슈 관련 현황 확인을 위해 사회책임경영 부문에서의 리스크 관리 수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함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한국ESG기준원 책임투자본부 ESG 데이터팀 선임연구원, yrkim@cgs.or.kr

1)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번역본,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2023.12.

- 한국ESG기준원(이하 KCGS)의 ESG 모범규준에서는 사회책임경영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인권, 노동관행, 공정운영관행, 지속가능한 소비, 정보 보호,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업의 효과적인 사회책임경영 추진을 위해서는 각각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권고함

〈표 1〉 사회책임경영 주요 이슈 관련 리스크

핵심 이슈	관련 리스크
노동관행	안전보건 관련 리스크
인권	인권 침해 관련 리스크
공정운영관행	불공정거래 및 공정경쟁 관련 리스크
지속가능한 소비	소비자 권익 침해 관련 리스크
정보 보호	개인 정보 보호 유출 관련 리스크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관련 리스크

출처: KCGS 모범규준

- 본고에서는 사회책임경영의 주요 이슈 중 모든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지는 이슈인 노동관행, 인권, 공정운영관행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특히 산업별로 리스크 관리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 산업별 리스크 관리 수준과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에서 선정한 중대성 이슈 간 연관성을 확인하여 국내 상장기업들이 사회책임경영 관련 리스크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함
 - 기업은 중대성 평가 시행을 통해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적 영향도와 기업이 외부에 미치는 영향인 환경·사회적 영향도를 분석하고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중대 이슈를 선정하여 ESG 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공개함
 - 그 외 주요 이슈의 경우 산업별로 고려되는 중요도가 상이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 지속가능한 소비 이슈의 경우 개인 소비자와의 관계가 중요한 B2C 기업에서는 높은 수준으로 고려되지만, 기업 간의 거래를 하는 B2B 기업에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아님
 - 정보 보호 이슈의 경우 고객 데이터가 사업의 핵심 요소인 금융업, 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의 서비스 산업에는 주요 이슈임에 반해 그 외 산업에는 상대적으로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이슈임
 -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 이슈의 경우 사업 영위를 위해서 환경 등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불가피한 산업인 에너지, 부동산 등의 산업에는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이슈임에 반해 그 외 산업에는 비교적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님

산업별 리스크 관리 수준 분석 방법

□ 분석 대상

- (분석 대상) 2023년 KCGS의 ESG 평가대상 기업 중 유가증권 상장기업 791사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함
- (분석 데이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홈페이지 등 기업이 대외 공개한 자료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함

□ 분석 방법

- 사회책임경영 관련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기업들의 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산업별 평균값(산업별 점수)을 도출하여 산업별 리스크 관리 수준을 파악하고자 함
 - KCGS 모범규준에서 제시된 리스크별 관리 방안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한 2023년 KCGS의 ESG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국내 상장기업의 리스크 관리 수준을 구분함

〈표 2〉 리스크 관리 관련 KCGS 모범규준 요약

리스크 구분	내용
안전보건	- 안전보건에 대한 위기관리대책을 마련해 발생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과정을 관리하여야 함 -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안전보건 관리 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안전보건 개선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활동내역을 이사회에 보고 및 정량적 목표의 달성도를 경영진의 보상 체계에 반영하여야 함
인권	-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잠재적 인권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해야 함 -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 예방 및 완화 조치를 마련하여 인권 위험 관리를 해야 함 - 인권경영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평가 및 관리하여야 함 - 인권경영 관련 정책과 활동 및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함
불공정거래 및 공정경쟁	- 공정한 거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절차 및 대책을 마련하고 공개해야 함 -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부당공동행위 금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준수하여야 함

출처: KCGS 모범규준

- 리스크 관리 수준은 5개 단계로 구분했으며 각 수준별로 0점부터 4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여 분석함

〈표 3〉 리스크 관리 수준별 점수 부여

수준	점수
미흡	0점
보통	1점
양호	2점
우수	3점
탁월	4점

- 분석 대상 기업의 산업은 ① B2C vs. B2B 기업, ② KCGS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회책임경영의 산업분류체계에 따른 산업분류로 구분하여 분석함

〈표 4〉 산업 구분-사회 산업분류체계

산업분류	
1.에너지	15.제약과생물공학
2.소재	16.은행
3.자본재	17.증권
4.상업서비스와공급품	18.다각화된금융
5.운송	19.보험
6.자동차와부품	20.부동산
7.내구소비재와의류	21.소프트웨어와서비스
8.호텔, 레스토랑, 레저 등	22.기술하드웨어와장비
9.소매(유통)	23.반도체와반도체장비
10.교육서비스	24.전자와 전기제품
11.식품과기본식료품소매	25.디스플레이
12.식품, 음료, 담배	26.전기통신서비스
13.가정용품과개인용품	27.미디어와엔터테인먼트
14.건강관리장비와서비스	28.유틸리티

출처:KCGS 홈페이지

- B2B/B2C 두 산업의 차이는 T-Test를 통해 분석함
 - T-Test는 두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하는 통계분석 기법으로, B2B 기업과 B2C 기업 사이의 리스크 관리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함
- 사회 산업분류체계에 따른 산업별 차이는 K-means clustering을 통해 분석함
 - K-means clustering은 유사한 속성을 가진 데이터를 특정 개수로 군집화하는 분석 방법으로, 산업별 접수를 상, 중, 하 3개의 군집으로 구분하여 산업별 상대적 리스크 관리 수준을 파악하고자 함
 - 리스크의 종류에 따라 관리 수준에 전반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의 절대적인 수준을 측정하기보다는 각 리스크 관리에 대한 다른 산업 대비 상대적인 수준을 파악하여 전체 산업 내에서의 위치를 알아보하고자 함

산업별 리스크 관리 수준 분석 결과

1) B2B/B2C 산업 분석 결과

- T-Test를 통해 안전보건 리스크, 인권 리스크, 불공정거래 및 공정경쟁 리스크 각각에 대한 B2B 기업과 B2C 기업의 리스크 관리 수준을 비교한 결과 모든 리스크에 대해서 B2C 기업의 관리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5〉 T-Test 결과: B2B-B2C 리스크 관리 수준 분석²⁾

	안전보건 리스크		인권 리스크		불공정거래 및 공정경쟁 리스크	
	B2B	B2C	B2B	B2C	B2B	B2C
평균	1.130019	1.61194	0.520076	0.899254	0.456979	0.649254
분산	2.46199	2.807647	1.07383	1.678951	0.746709	1.075018
관측수	523	268	523	268	523	268
자유도	789		446		461	
t 통계량	-3.99469		-4.15752		-2.60713	
P(T<=t) 단측 검정	0.0000354**		0.0000193**		0.004713**	
t 기각치 단측 검정	1.646787		1.648277		1.648166	
P(T<=t) 양측 검정	0.0000708**		0.0000386**		0.009426*	
t 기각치 양측 검정	1.962975		1.965297		1.965123	

*p-value<0.05, **p-value<0.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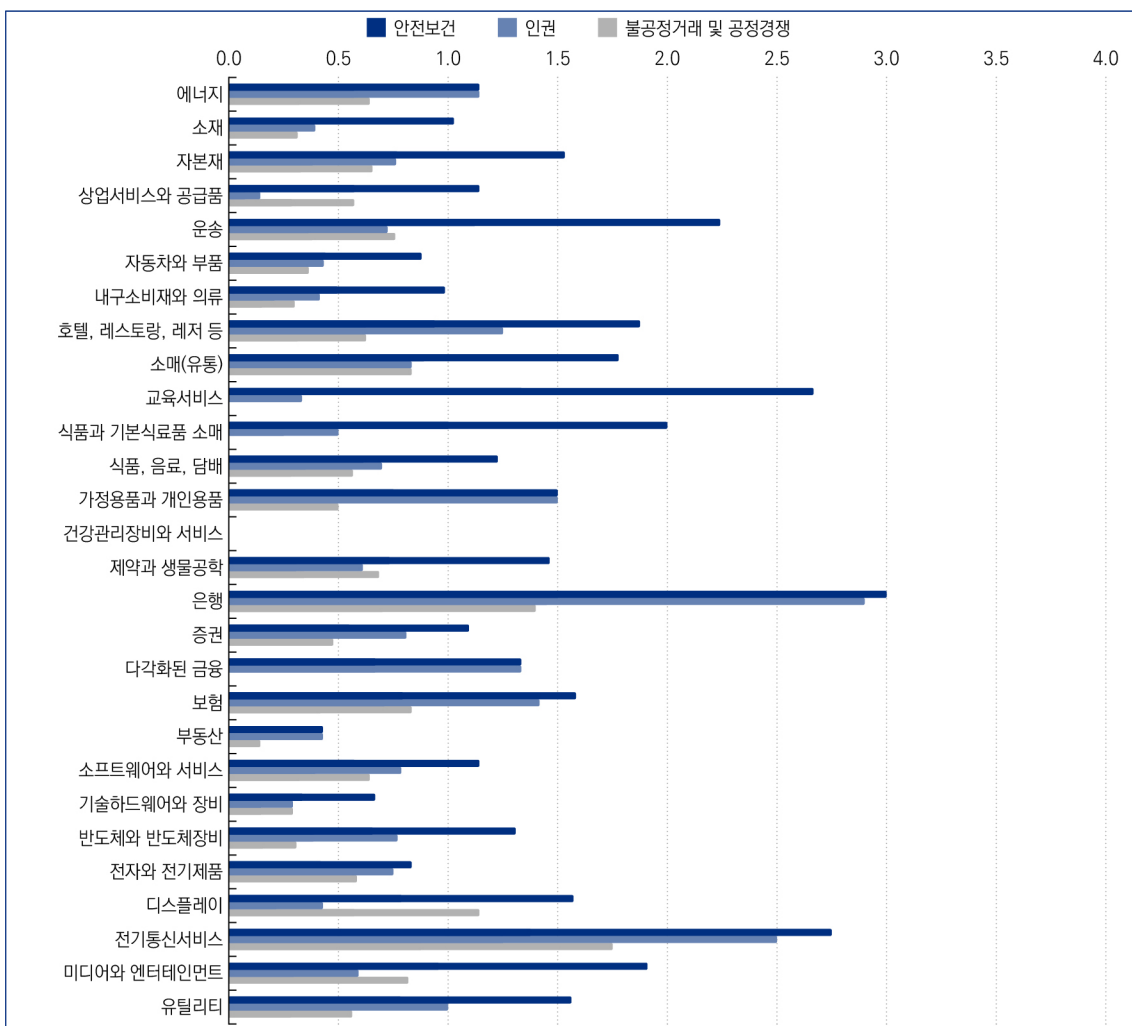
- 모든 리스크 관리 수준에 대하여 B2C 산업의 평균 점수가 더 높으며, B2B 산업과 B2C 산업의 평균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됨
- B2C 기업의 경우 B2B 기업에 비해 이해관계자 중 소비자를 중요하게 고려함에 따라 ESG 경영에 대한 내용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공개하는 경향이 있음
- B2C 기업이 리스크 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개한 점이 이런 결과가 도출된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판단됨
- 2023년 기준 B2B 기업이 산업 특성상 B2C 기업에 비해 리스크 관리 관련 공시 정도가 낮으나, 앞으로는 국내 ESG 공시 의무화를 대비하여 리스크 관리 및 공시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T-test 검정 전에 분산분석(F-test)을 수행함. 안전보건 리스크의 경우 B2B/B2C 집단 간 분산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음에 따라 등분산 가정 T-test를 수행하였으며, 인권 리스크와 불공정거래 및 공정경쟁 리스크의 경우 B2B/B2C 집단 간 분산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에 따라 이분산 가정 T-test를 수행함

2) 사회 산업분류체계에 따른 산업 분석 결과

- 안전보건 리스크, 인권 리스크, 불공정거래 및 공정경쟁 리스크 관리 수준의 산업별 점수는 아래 그래프와 같음
-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의 전반적인 수준이 다른 두 개의 리스크 관리 수준보다 동일하거나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안전보건 리스크의 경우 인명 피해와 직결되어 정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는 등 산업안전에 대한 기업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로 인해 기업들의 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모든 기업들은 ESG 공시 의무화를 대비하여 인권과 불공정거래 및 공정경쟁 리스크 관리 수준도 점진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음

〈그림 1〉 리스크 관리 수준에 대한 산업별 평균 점수



□ K-means clustering 분석을 통해 안전보건 리스크, 인권 리스크, 불공정거래 및 공정경쟁 리스크 각각의 관리 수준에 대해 상, 중, 하로 구분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표 6〉 산업별 리스크 관리 수준

산업	안전보건	인권	불공정거래 및 공정경쟁
1.에너지	하	중	중
2.소재	하	하	하
3.자본재	중	중	중
4.상업서비스와공급품	하	하	중
5.운송	상	중	중
6.자동차와부품	하	하	하
7.내구소비재와의류	하	하	하
8.호텔,레스토랑,레저 등	중	중	중
9.소매(유통)	중	중	중
10.교육서비스	상	하	하
11.식품과기본식품소매	중	하	하
12.식품,음료,담배	하	중	중
13.가정용품과개인용품	중	중	중
14.건강관리장비와서비스	하	하	하
15.제약과생물공학	중	하	중
16.은행	상	상	상
17.증권	하	중	중
18.다각화된금융	중	중	하
19.보험	중	중	중
20.부동산	하	하	하
21.소프트웨어와서비스	하	중	중
22.기술하드웨어와장비	하	하	하
23.반도체와반도체장비	중	중	하
24.전자와 전기제품	하	중	중
25.디스플레이	중	하	상
26.전기통신서비스	상	상	상
27.미디어와엔터테인먼트	중	하	중
28.유틸리티	중	중	중

- 세 가지 리스크에 대해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산업은 총 14개임
 - 이 중 2개 산업은 모든 리스크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관리(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6개 산업은 평균(중)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6개 산업은 모두 평균 이하(하)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모든 리스크에 대해 우수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산업은 은행업과 전기통신서비스업이었음
 - 여기에 해당하는 14개 산업의 경우 리스크 관리 수준이 기업의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을 따르며 산업에 따라 특출나게 관리하는 리스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동일한 수준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 14개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산업의 경우 산업 특성에 따라 리스크별 관리 수준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산업 특성에 따라 특정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ESG 공시 의무화를 대비하여 이슈별 차이를 두기보다는 모든 ESG 리스크에 대해 양질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음

- 각 리스크에 대한 산업별 관리 수준을 살펴보면, 안전보건 리스크와 관련하여 28개 산업 중 4개 산업인 운송, 교육서비스, 은행, 전기통신서비스 산업이 우수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안전보건 관련 리스크 관리가 미흡한 산업은 모두 12개로 다수의 산업에서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 수준은 상이지만 다른 두 개의 리스크 관리 수준이 중이나 하로 안전보건 리스크를 다른 리스크 대비 우수하게 관리하고 있는 산업은 운송과 교육서비스임
 - 운송 산업은 산업 특성상 본사 외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사업장 단위로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 체계가 고도화되어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교육서비스 산업의 경우, 인권 리스크와 불공정거래 및 공정경쟁 리스크 관리 수준이 둘 다 하임
 - 교육서비스 산업으로 분류되는 모든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지 않으며, 그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가 제한적임에 따라 안전보건 리스크 외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내용 확인이 어려워져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을 수 있음

- 인권 리스크 관리 수준 분석 결과 은행, 전기통신서비스 산업이 우수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12개의 산업이 인권 리스크를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권 리스크 관리 수준이 상이면서 다른 두 개의 리스크 관리 수준보다 높은 산업은 없는 점을 봤을 때 인권 리스크를 특출나게 관리하는 산업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미디어와엔터테인먼트, 건강관리장비와서비스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에서 인권 리스크

관리를 우수한 수준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미흡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산업에 지속적인 개선 및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불공정거래 및 공정경쟁 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3개 산업인 디스플레이, 은행, 전기통신서비스 산업이 우수한 수준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10개 산업이 미흡한 수준임이 확인됨
- 세 가지 리스크 중 다른 리스크 관리 수준보다 불공정거래 및 공정경쟁 리스크 관리 수준이 상으로 높은 산업은 디스플레이임
 - 디스플레이 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 중 약 86%의 기업이 B2B 기업임
 - 이에 따라 대다수의 디스플레이 기업이 협력사와의 거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정운영관행 관련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판단됨

산업별 리스크 관리 수준과 기업의 중대성 평가 결과 비교

- 특정 리스크의 관리 수준이 우수한 산업의 경우, 특정 리스크를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이 명확히 인식하여 중대성 평가 결과 중대 이슈로 선정함에 따라 체계적 관리 수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특정 리스크를 중요한 이슈로 인식하기 때문에 해당 리스크의 관리 수준이 높은 것이며, 이는 기업의 중대성 평가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중대 이슈로 선정된 이슈에 대해서 기업이 리스크 관리를 높은 수준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고자 함
-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와 불공정거래 및 공정경쟁 리스크 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중대성 평가 결과를 확인함³⁾
 - 운송과 교육서비스 산업의 기업들이 선정된 중대 이슈에 안전보건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산업의 기업들이 실시한 중대성 평가 결과에 공정운영관행 이슈가 중요 이슈로 나타났는지 알아보고자 함
 - 또한 산업별 분석 결과 리스크 관리 수준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나지만, 해당 리스크를 중대 이슈로 선정하지 않은 기업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확인해 보고자 함
-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 수준이 높은 운송 및 교육서비스 산업에 속한 기업 32개사 중 14개사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중대성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음
 - 14개사 중 1개사를 제외한 기업들은 모두 중대 이슈로 안전보건을 선정함

3) 인권 리스크 관리의 경우 인권 리스크 관리 수준이 우수(상)하면서 다른 리스크 관리 수준보다 높은 산업이 없음을 따라 제외함

- 해당 기업들은 안전보건 이슈의 재무적 영향도를 환경·사회적 영향도보다 높게 평가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기업들이 안전보건 리스크가 기업의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분석했다는 의미임
- 또한 안전경영을 위해 이사회 보고 및 승인 과정을 거쳐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안전보건 관련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발생 가능한 안전보건 리스크 방지 목적의 활동을 수행 중이며 고도화해 나갈 계획임이 확인됨
- 안전보건을 중대 이슈로 선정하지 않은 1개사는 최근 몇 년간 안전보건 관리 리스크로 인해 기업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안전보건의 중대 이슈에서 제외된 것으로 해석됨
 - 해당 기업은 중대재해 ZERO화를 목표로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를 진행해왔으며, 그 결과 지난 3년동안 산업재해율이 평균 0.01%임
 - 안전보건을 중요하게 고려해야하는 이슈로 평가하지 않아서 중대 이슈로 선정하지 않았다고보다는 다른 이슈에 비해 리스크 관리가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리스크 발생률이 낮기 때문에 이슈의 중대성 평가에서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불공정거래 및 공정경쟁 리크스 관리 수준이 높은 디스플레이 기업 7개사 중 3개사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 중 1개사의 경우 그룹사의 중대성 평가결과만을 공개하고 있음에 따라 2개사의 중대성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 2개사 중 1개사만이 공정운영관행 이슈를 중대 이슈로 선정함
 - 중대 이슈로 선정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불공정거래 및 공정경쟁 관련 이슈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별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됨
 - 해당 기업은 공정운영관행 관련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기업 비즈니스나 환경·사회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낮음에 따라 이슈의 중대성 평가 시 중대 이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산업별 리스크 관리 수준과 기업의 중대성 평가 결과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의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중대 이슈로 선정하고 있는 경향성이 확인됨
- 중대 이슈로 선정된 이슈에 대해서 기업이 리스크 관리를 높은 수준으로 하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음
- 하지만 기업은 중대성 평가를 할 때 어떤 이슈가 기업 경영과 외부 환경에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함

- 이에 따라 기업이 실제로는 비즈니스와 이해관계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로 판단하여 높은 수준의 관리 체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이슈와 관련한 부정적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낮다면 중대성 평가 결과 중대 이슈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기업이 중대성 평가를 통해 중대 이슈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업이 해당 이슈를 중요한 이슈로 인식하지 않으며 다른 이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음

마치며

- 본고에서는 사회 관련 이슈 중 안전보건, 인권, 공정운영관행 이슈와 관련한 국내 기업의 리스크 관리 수준을 분석함
 - 전체 산업에 대해서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 수준이 인권 및 공정운영관행 이슈 관련 리스크 관리 수준과 비교했을 때 동일하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 리스크 관리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며, 전체 산업 중 절반의 경우 리스크에 따른 관리 수준에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이 중대성 평가 시행을 통해 선정한 중대 이슈에 대해서 기업이 높은 수준의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중대 이슈로 선정하지 않은 이슈에 대해서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국내 기업들은 ESG 공시 의무화를 대비하여 산업 및 리스크 종류에 상관없이 고도화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산업 특성에 따라 시급한 이슈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확인됨
 - 특정 이슈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기보다는 ESG 관련 각 이슈별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파악하고, 리스크 관리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며, 리스크 관리 활동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등의 프로세스를 가진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공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국내 상장기업의 감사 장기 재직 현황 분석

구현지, 박정민*

- ▶ 상장기업 감사기구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역할은 이사와 경영진에 대한 감시·감독이며, 이에 감사기구에 엄격한 수준의 독립성이 요구되지만, 상법상 감사기구가 감사와 감사위원회로 이원화됨에 따라 두 감사기구의 독립성 요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됨
- ▶ 이러한 독립성 요건 중 '장기 재직'과 관련하여,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장기 재직을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감사에 대한 장기 재직 결격사유는 법제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논의가 부족한 상황임
- ▶ 본 보고서에서 국내 상장기업의 감사 장기 재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분석 대상 기업의 약 21.3%에서 감사의 장기 재직이 확인되었으며, 장기 재직 감사 중 동일한 회사의 사내이사로 장기간 근무한 이후에 감사로 선임되는 등 감사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큰 사례가 발견됨
- ▶ 아울러 감사의 장기 재직이 확인되는 기업 중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외 감사의견을 받은 사례 또한 확인됨
- ▶ 따라서 기관투자자는 감사의 장기 재직이 확인되는 기업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감사 의무 해태로 인한 경영진의 횡령·배임 및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이 발생할 시, 장기 재직 감사의 연임 사유 등을 문제시할 필요가 있음. 더 나아가 해당 감사의 책임소지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독립성이 확보된 신규 감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서론

- 감사의 주요 직무는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이므로 감사기구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 존재해야 하며, 감사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은 감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전제로서 기업경영의 보편적 관심 사항임¹⁾
- 다만 국내 상장회사 감사제도 관련 상법 규정에서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상근)감사와 (사외이사인)감사위원에 각자 다른 자격요건을 적용하며, 이 중 독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요건 중 하나인 '장기 재직' 요건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됨
- 특히 한국ESG기준원에서 발표한 2024년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에 따르면, 감사 선임

* KCGS 책임투자본부 책임투자팀 연구원, white07@cgs.or.kr

KCGS 책임투자본부 책임투자팀 연구원, jmpark@cgs.or.kr

1) 송일두(2022), "회사법상 감사위원회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북아법연구 16(1), 403-432.

안건은 전체 안건 중 가장 높은 반대율(43.6%)을 보였으며, 감사 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 사유 중 '장기연임으로 인한 독립성 훼손 우려'가 2022년(60.9%), 2023년(76.5%)에 이어 2024년에도 가장 높은 비중(51.9%)을 보임²⁾

- 이에 본 리뷰에서는 먼저 감사제도와 관련한 국내 상법 조항을 살펴보고, 이 중 감사와 감사위원의 선임 요건을 비교하고자 함
- 이후 장기 재직과 감시 기능수행 간의 연관성에 대한 국내외 논의를 살펴보고, 기업지배구조 규범과 국내 주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 내 관련 규정을 살펴봄
- 마지막으로 감사제도를 채택한 국내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감사 재직 현황을 분석하여 재직기간 및 이해관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감사제도 관련 상법 검토

- 상법에서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것을 감사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의 규모에 따라 내부 감사기구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표 1〉 참고)
- 우리 상법은 1999년 개정을 통해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 내의 위원회의 하나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상법 제415조의2 제1항)”고 규정하여, 기존의 감사제도를 유지하면서 이사회 구성원 중 일부를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는 미국식 감사위원회 제도를 선택적으로 도입하였음³⁾

〈표 1〉 상법상 상장기업 규모별 감사기구

기업 규모	감사기구
자산총액 1천억 원 미만인 상장회사	감사(비상근, 상근 모두 가능), 감사위원회 中 택1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인 상장회사	상근감사, 감사위원회 中 택1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	감사위원회(의무 설치)

- 감사와 감사위원은 기업의 내부 감사기구라는 점에서 기능은 동일하지만, 두 감사기구의 선임 방식 및 구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법령상 결격사유에 차이가 발생하게 됨
- 감사는 상근 여부에 따라 상근감사와 비상근감사로 나뉘며, 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의 권을 통해 선임됨
- 감사위원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과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으로 나뉘며, 분리선출되는 경우⁴⁾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에서 사내 또는 사외이사로 선임된 후에 감사위원 선임의 권을

2) 2024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한국ESG기준원, 2024.04.26.
 3) 서의경(2015), “주식회사 감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5권 제3호, 261-262.

- 통해 감사위원으로 선임됨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상법에서 규정하는 상근감사의 결격사유가 준용되므로(상법 제542조의11 제3항) 상근감사와 결격사유에 차이가 없지만,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은 선임 시 법령상 사외이사 결격사유가 적용됨
 - 한편 상법은 감사 자체에는 동일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등을 겸직할 수 없는 겸임 금지 조항(상법 제411조)의 결격사유만을 규정하고 있고, 상근감사에는 별도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법령상 상근감사와 사외이사의 주요 결격사유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표 2> 참고)
- 상근감사에 대해서는 사외이사와 달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해당 상장회사 외에 2개 이상의 회사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해당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및 세무대리 등의 자문용역 거래가 있는 자, 해당 상장회사의 100분의 1 이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재직했거나 계열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9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자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외에도, 당해 회사 및 계열회사 재직이력에 대하여 상근감사는 최근 2년 이내에 재직했던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외이사는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는 주식 보유량 및 거래내역, 연임 및 겸직, 당해 회사 및 계열사 재직이력 등과 관련하여 상근감사의 결격사유와 비교할 때 더욱 엄격한 독립성 요건을 갖추고 있음

<표 2> 상근감사-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법령상 결격사유 비교

상근감사	사외이사
<p>상법 제542조의10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제1항 본문의 상근감사가 되지 못하며,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42조의8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다만, 이 절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회사의 경영 	<p>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 제3항 각 호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4)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에 따르면, 제542조의11 제1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함,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함

<p>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p>	<p>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p> <p>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p>
<p>상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법 제542조의10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2.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p>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2.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3.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자 4. 해당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상장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5. 해당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 6.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 7.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
	<p>상법 제382조 제3항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상법은 기업 규모별로 설치·운영해야 하는 감사기구를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상근, 비상근), 감사위원 모두 기업의 내부 감사기구로서 같은 기능을 수행함에도 법령상 요구되는 독립성 수준이 각자 다르게 나타남
-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해야 하는 감사기구의 업무 특성상 엄격한 독립성이 요구되나, 상근감사보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요건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
- 이에 일부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상근감사에 준용해야 한다는 학계의 의견⁵⁾도 존재함
- 따라서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중에서 감사의 독립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건들은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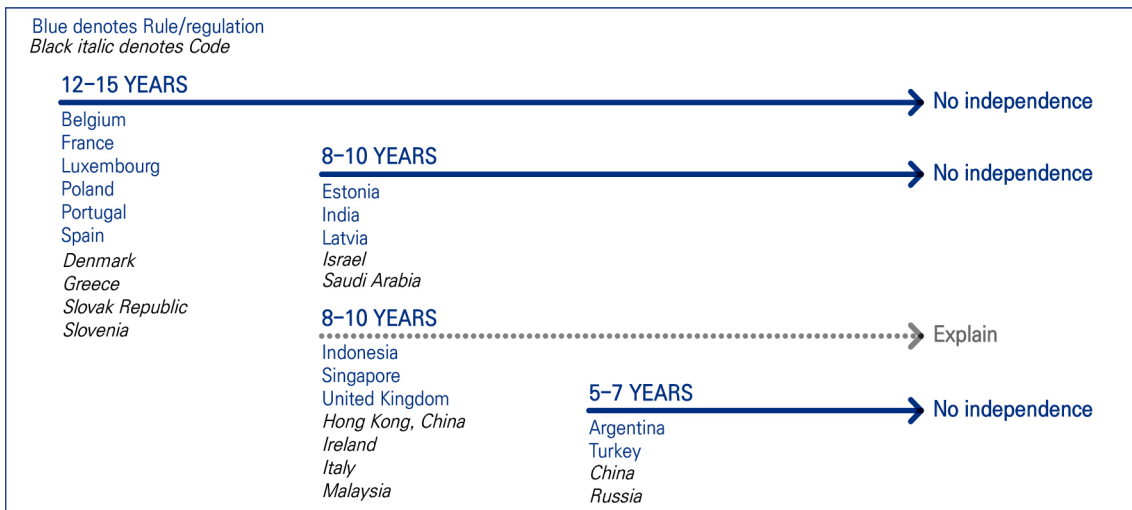
5) 김순석(2022), "상법상 감사 제도의 과제와 개선방향", 『선진상사법률연구』 제100호, 50면.

선임 시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장기 재직과 감시의무 수행 관련 국내외 논의

- 감사 재임기간의 장기화에 대한 문제점이 아직 국내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적은 없으나, 사외이사 재임기간의 장기화가 기업성과 및 재무정보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 및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옴
-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사외이사 재임 초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경영진의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가능성이 존재하나 재임기간이 늘어날수록 기업에 대한 학습효과로 전문성이 제고된다는 견해⁶⁾⁷⁾와 재임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유착관계 형성으로 인해 감시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⁸⁾⁹⁾¹⁰⁾가 모두 존재함
- 현재로서 사외이사의 재임기간 장기화에 대한 공통의 의견이 존재하지 않아 각국은 국가별 특성에 따라 근속연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OECD(2019)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19개 국가들은 사외이사의 최대 근속연수를 5년에서 15년까지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음 (<그림 1> 참고)

〈그림 1〉 OECD 주요국의 사외이사 최대 근속연수



출처: OECD Corporate Governance Factbook (2019)

6) Beasley, M. S.(1996),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the Board of Director Composition and Financial Statement Fraud", Accounting Review, 71(4), 443-465.
 7) Schnake, M. E., W. B. Fredenberger and R. J. Williams(2005), "The Influence of Board Characteristics on the Frequency of 10-K Investigations of Firm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Journal of Business Strategies, 22(2), 101-117.
 8) Vafeas, N.(2003), "Length of Board Tenure and Outside Director Independence", Journal of Business Finance & Accounting, 30(7-8), 1043-1064.
 9) 김상훈, 김양민(2008), "이사회와 최고 경영층의 관계적 요인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전략경영연구, 11(1), 43-63.
 10) 임세훈, 박영석(2020), "재임기간에 따른 사외이사 비율과 기업가치", 아태비즈니스연구 v.11(4), .225-241.

- 다만 김선미 외(2016)는 개별 사외이사의 재임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재무보고의 질이 낮아졌다고 분석하며¹¹⁾, Vafeas(2003) 또한 사외이사가 장기 재직할 경우 경영자 편에 서서 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¹²⁾
 - 또한 국내 기업지배구조 환경이 지배주주 중심이라는 특성에 더해, 최근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 등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독립적인 위치에서의 경영진 감시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와 감사 모두에게 장기 재직으로 인한 독립성 훼손 우려 등 부정적 효과를 차단할 필요가 존재함
- 이에 국민연금을 제외한 국내 주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과 K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국내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는 감사에 대해서도 연속 재임연수를 규정함으로써 사외이사에 준하는 적격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음 (〈표 3〉 참고)

〈표 3〉 감사 장기 연임 관련 국내 연기금 행사지침 및 관련 규정

기관(개정일자)	감사 장기 연임 관련 판단기준	기준여부
국민연금공단 (24.03)	(개정 전) 28. 사외이사의 선임 4. 재직한 임기와 신규로 재직할 임기를 포함 하여 사외이사 재직연수가 당해회사 및 그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는 자 29.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27.이사의 선임 및 28. 사외이사의 선임의 건을 준용한다. ⇒ (2022.02 개정) 상법 개정으로 사외이사의 장기 재직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상 결격사유'로 반대하도록 개정됨으로써,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에 대한 장기 연임 판단기준 없음	×
공무원연금공단 (22.03)	3-1-2. (사외이사 후보의 결격사유) 해당회사 및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서의 신규임기를 포함하여 연속 재임하는 연수가 9년(금융업종 5년)을 초과하는 자(사외이사가 사외이사 임기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재임하는 것으로 본다) 4-1-1.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3-1.(이사의 선임)을 준용한다.	○
사학연금 (23.07)	30. 사외이사의 선임 4. 당해회사에 신규 임기를 포함하여 연속 재임하는 연수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31. 감사(위원)의 선임 ▪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사외이사 후보의 결격사유를 준용	○
KCGS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24.02)	2.1 사외이사 후보 결격사유 - 계열회사를 포함한 해당 회사에 사외이사로서 신규 임기를 포함하여 연속 재임하는 연수가 6년을 초과하는 자(법적으로는 계열사 합산 9년을 적용함) 4.1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11) 김선미, 김숙민, 신상훈.(2016). 개별사외이사 재임기간, 재무보고의 질, 재량적 발생액. Korea Business Review, 20(2), 163-182.

12) Vafeas, N.(2003), 앞의 논문, 1043-1064.

기관(개정일자)	감사 장기 연임 관련 판단기준	기준여부
KCGS-KICPA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매뉴얼·체크리스트 (18.08)	2.4 (감사위원 임기) 감사위원의 임기는 존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 안내 지침 (중략) <input type="checkbox"/> 감사위원의 재선임 및 중임은 가능하나, 동일인이 장기간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input type="checkbox"/> 현재 감사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감사위원의 중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감사와 마찬가지로 중임이 허용됨 <input type="checkbox"/> 그러나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감사위원이 장기간 감사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감사위원 재선임 및 중임 시 독립성 훼손여부에 대한 추가 고려가 필요함	△

국내 상장기업의 감사 재직 현황 분석

1) 분석 개요

- (분석 대상) 2024년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중 감사(상근감사, 비상근감사)를 선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기업 1,584사(유가증권시장 324사, 코스닥시장 1,260사)를 대상으로 함
 - 분석 대상에 포함되는 감사는 총 1,630명으로 유가증권시장 345명, 코스닥시장 1,285명임
 - 리츠, 스팩(SPAC) 등 명목상 회사와 국내에 상장된 해외회사는 분석 대상 기업에서 제외함
- (용어 정의) 한국ESG기준원은 ‘K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상법상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연임제한 규정(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7호)을 감사에게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당해 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재직하는 것을 ‘장기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함
- (분석 방법) 감사의 재직기간은 해당 감사의 최초 선임일부터 2024년 반기보고서 기준일(202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함
 - 최초 선임일은 반기보고서 상 기재된 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가 부정확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의 선임일을 활용함
 - 동일한 회사에서 감사기구를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로 변경하여 동일 인물이 감사위원에서 감사로 재선임된 경우에는 감사 재직기간에 감사위원 재직기간을 합산함
 - 감사 선임 안건 부결로 인한 기존 감사의 직위 유지 기간 및 법원 선임 일시감사 기간은 제외하고 재직기간을 산정하였음
 - 재직기간 산정 시, 일 단위는 버림하고 월 단위까지로 계산하였음

2)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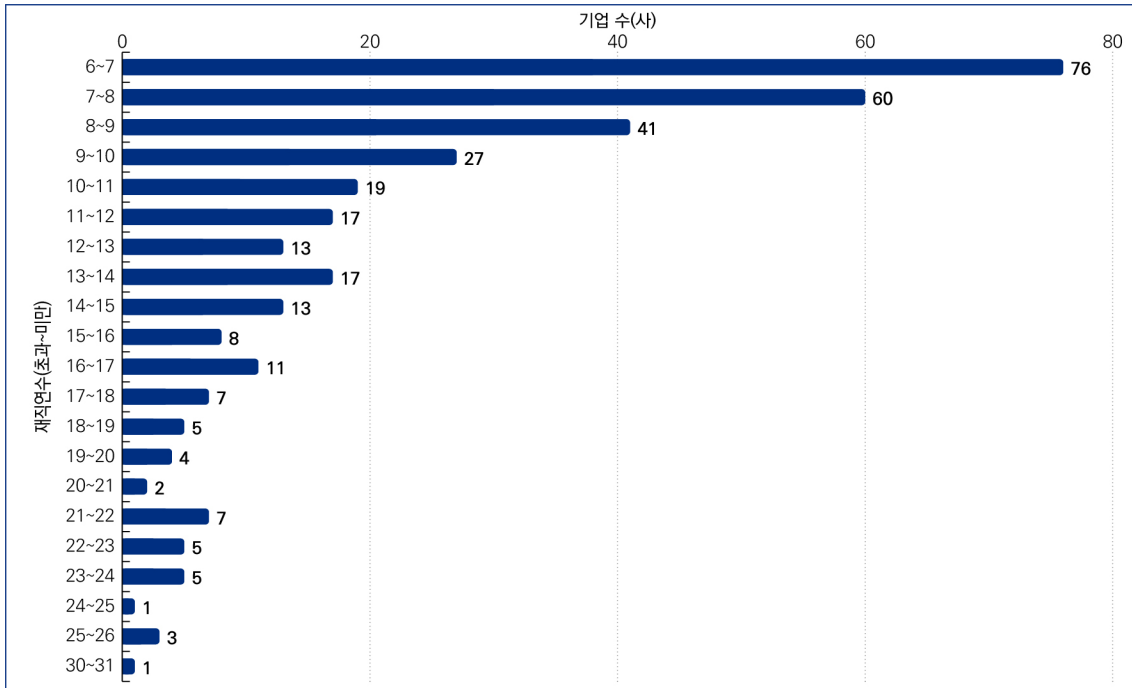
- 전체 분석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감사의 평균 재직기간은 약 4.07년이며, 유가증권 상장법인의 경우 4.48년,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 3.96년인 것으로 나타남
- **전체 분석 대상 기업 중 6년을 초과하여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기업은 총 337사(전체 분석 대상 기업의 21.3%)로 확인됨** (<표 4> 참고)
 - 시장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 상장법인 중 74사, 코스닥 상장법인 중 263사에서 감사가 장기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감사가 장기 재직 중인 기업의 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더 많지만, 각 시장에서의 전체 상장기업 수 대비 감사가 장기 재직 중인 기업의 비중은 유가증권시장이 22.8%로, 코스닥시장(20.9%)보다 소폭 높게 나타남

〈표 4〉 시장별 장기 재직 감사 현황

구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합계
장기 재직 감사 수(명)	78	264	342
전체 감사 수(명)	345	1,285	1,630
비중(%)	22.6%	20.5%	21.0%
장기 재직 감사 보유 기업수(사)	74	263	337
전체 기업 수(사)	324	1,260	1,584
비중(%)	22.8%	20.9%	21.3%

- 장기 재직 중인 감사를 보유한 기업의 재직기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6년 초과 7년 미만인 기업이 76사(2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년 이상 재직한 사례도 확인됨 (<그림 2> 참고)

〈그림 2〉 감사 재직기간별 기업 분포 (감사 재직기간 6년 초과인 상장사 대상)



- 장기 재직하고 있는 감사 중 당해 회사의 전직 등기이사로 재직한 이력이 확인되는 사례(16건)도 발견됨
 - 이 중 9개사(56.3%)의 감사가 재직 이전에 당해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이력이 확인되며,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에는 해당하지 않아 상법상 감사의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독립적인 위치에서 경영진을 견제하고 내부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의 책무를 고려했을 때 독립성 훼손이 우려됨 (〈표 5〉 참고)
 - 이사 재직 이력이 있는 감사의 최장 재직연수는 17.3년으로 나타났으며, 이사로 재직하였던 시기에 재직하고 있던 대표이사가 감사 재직 시점인 현재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경영진 간 친밀도 형성 및 유착관계로 인해 내부감사시스템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될 수 있음
 - 또한 박지영(2022)에 따르면, 상법에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까지 넓게 정하고 있으나, 상근감사에 대해서는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으로 좁게 설정하여 최대주주의 친인척 등이 장기 재직 감사로 재직하는 사례 또한 확인된다는 점에서 장기 재직 감사에 대한 추가적인 독립성 훼손 가능성이 존재함¹³⁾

13) 박지영, “국내 상장기업 감사 독립성- 장기 재직 현황 및 사례”, KCGS Report 제12권 12호, 2022.12.

〈표 5〉 장기 재직 감사의 당해회사 재직이력 사례

기업명	시장구분	재직연수	감사 임기 시작일	감사 외 직책 재직기간
A	코스닥	17.3	2007.03~	사내이사: 2004-2007
B	유가	14.3	2010.03~	사내이사: 1992-1996
C	유가	13.3	2011.03~	사내이사: 1994-2009
D	유가	12.3	2011.03~	사내이사: 2004-2008
E	유가	9.3	2015.03~	사내이사: 2001-2012
F	코스닥	9.3	2015.03~	사내이사: 2000-2010
G	코스닥	7.3	2017.03~	사내이사: 2005-2011
H	코스닥	7.3	2017.03~	사내이사: 2005-2006
I	유가	6.3	2017.03~	사내이사: 2000-2003

출처: DART, KCGS 재구성

- 더하여, 장기 재직하고 있는 감사를 보유한 기업 중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하거나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외 감사의견(한정, 의견거절)'을 받은 사례도 발견됨
- 해당 경우에 감사의 장기 재직으로 인한 독립성 훼손 우려 외에도 감사 역할의 충실성에 대한 우려가 가중된 측면이 있으므로 이들 기업에 대해서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표 6〉 횡령배임 사건 발생 사례

기업명	시장구분	감사 재직연수	감사 임기 시작일	발생일*	내용
AA	코스닥	9.3	2015.03~	2024.08	전 미등기임원 배임·수재 혐의 발생
BB	코스닥	6.8	2017.10~	2018.07	전 대표이사 배임 혐의 발생
CC	유가	10.3	2014.03~	2015.07	부회장 횡령 혐의 유죄 확정
DD	코스닥	15.6	2008.12~	2021.04	전 대표이사 횡령·배임 혐의 발생
EE	코스닥	7.2	2017.05~	2020.07	전 이사 배임 혐의 발생
FF	코스닥	7.4	2017.02~	2023.02	임원 횡령 혐의 발생
GG	유가	14.2	2010.05~	2023.04	임원 배임 혐의 발생

* DART에 공시된 일자임

출처: DART, KCGS 재구성

〈표 7〉 적정 외 감사의견 사례

기업명	시장구분	감사 재직연수	감사 임기 시작일	감사의견 대상기간	내용
AAA	코스닥	13.3	2011.03~	2024.01~2024.06	의견거절
BBB	코스닥	10.3	2014.03~	2020.01~2020.06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CCC	코스닥	7.8	2016.09~	2019.01~2019.06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DDD	코스닥	7.3	2017.03~	2024.01~2024.06	의견거절
EEE	코스닥	15.6	2008.12~	2021.01~2021.06 2022.01~2022.06	의견거절
FFF	코스닥	7.2	2017.05~	2019.01~2019.06 2020.01~2020.06	의견거절
GGG	코스닥	16.3	2008.03~	2017.01~2017.06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출처: DART, KCGS 재구성

결론

- 현행 상법은 상근감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감사위원 중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에는 상근감사의 결격사유가 준용되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은 사외이사의 결격사유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 사외이사와 달리 감사의 연임은 상법상 결격사유로서 제한되지 않고 있으므로 국내 기업들이 감사 선임 시 해당 감사의 장기 재직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실제 학계 및 자본시장에서도 사외이사의 장기 재직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상법 시행령 개정까지 이루어졌으나, 감사의 장기 재직에 대한 논의는 크게 진척되지 않은 상황임
 - 다만, 독립적인 위치에서 이사 및 경영진에 대한 감시·감독 의무를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상근)감사와 (사외이사인)감사위원의 결격사유를 달리 볼 유인이 없다 할 수 있음
 - 또한 과도한 장기 재직은 경영진과의 유착, 이해관계 형성 등으로 인해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사외이사의 연임제한과 마찬가지로 감사 또한 연임제한 규정 및 제도 등에 대한 논의 및 제정이 필요
- 실제 국내 상장기업의 감사 장기 재직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감사가 6년을 초과하여 장기 재직하고 있는 기업은 337사로, 전체 분석 대상 기업 수 대비 2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행 상법은 감사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지배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3% 초과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며(상법 제409조), 상장회사의 경우 특칙을 통해 최대주주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하여

- 의결권 3%를 초과하여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542조의12)
- 다만, 이러한 소위 3%룰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 후보가 주주총회에 후보로 상정된 이후,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이해관계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선임 과정 전반에서의 독립성 제고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이에 기업지배구조의 제도를 활용한 방안 중 하나로 감사후보추천위원회의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으나, 실제 해당 위원회를 설치한 상장기업을 찾아보기 어려움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며(상법 제542조의8), 이에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독립성 및 전문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 후 주주총회 결의가 이뤄지게 됨
 - 이에 KCGS 감사위원회·감사 모범규준은 “감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감사후보추천위원회가 주주총회에 감사후보를 추천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¹⁴⁾
 - 하지만 ‘KOSPI 200’ 편입 종목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별도의 감사후보추천위원회가 감사 후보를 추천한 사례는 없으며, 이사회에 의한 감사 추천 비중이 81.5%로 가장 높게 나타남¹⁵⁾
 - 결론적으로 감사 선임 시 감사위원과 비교하여 이사회, 특히 지배주주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감사의 독립성을 감사 선임 이전 단계에서부터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볼 여지가 있음
 - 이에 국내 상장기업의 감사 장기 재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감사제도를 채택한 기업 중 감사가 장기 재직하고 있는 기업이 상당수를 차지하며, 감사가 장기 재직하고 있는 기업들에서 감사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충실성 훼손의 우려가 큰 사례들이 발견됨
 - 기관투자자들은 투자 대상 기업의 감사 장기 재직 현황과 더불어 내부 감사시스템이나 회계감리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한 기업에는 감사의 독립성 및 충실성 확보 방안과 해당 감사의 연임 필요성 등을 회사에 구체적으로 질의해야 함

14) KCGS 감사 모범규준 II.1.3 (감사추천), KCGS, 2018.05.

15) KPMG ACI 2023 Audit Committee Outlook Vol.5 감사위원회 현황 및 활동 분석 리포트, 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2023.08.

Global News

1. 호주, 기업의 기후 공시 의무화 법안 통과

한효원*

- 호주에서 기업의 기후 공시 의무화 내용이 반영된 ‘재무부 법률 개정안(Treasury Laws Amendment(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and Other Measures) Bill 2024)’이 지난 8월 22일 상원에서 승인된 데 이어, 지난 9월 9일 하원을 통과함
- 이번 법안은 호주 재무부가 2023년 6월에 기후 관련 재무 공시 제도 추진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이며 2023년 10월, 호주 회계기준위원회(AASB)가 공개한 ‘기후 정보 공개 표준’ 초안에 기초함

주요 내용

- **(적용 기업)** 본 법안은 ‘일정 기준 이상의 상장기업’과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에 연간 재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비상장기업’에 적용되며, 해당 기업들을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 그룹부터 순차적으로 의무를 부여함

〈표 1〉 법안 적용 기업

(단위: AU\$)

그룹	그룹1	그룹2	그룹3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중 두 가지 이상 충족<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 매출이 5억 달러 이상• 통합 총자산 10억 달러 이상• 500명 이상의 직원■ 또는 NGER법¹⁾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거나 NGER법 제12조(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NGER법 제13조(1)항에 명시된 공표 임계값을 충족하는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중 두 가지 이상 충족<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 매출이 2억 달러 이상• 통합 총자산 5억 달러 이상• 250명 이상의 직원■ 또는 NGER법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거나 NGER법 제12조(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법인■ 또는 자산가치가 50억 달러 이상인 자산을 보유한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중 두 가지 이상 충족<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 매출이 5,000만 달러 이상• 통합 총자산 2,500만 달러 이상• 100명 이상의 직원■ 또는 본 법률이 적용되는 다른 모든 법인 및 연간 지속 가능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모든 법인
공시 의무화 시점	2025년 1월	2026년 7월	2027년 7월

출처 : 호주 재무부 법률 개정안(금융시장 인프라 및 기타 조치) 법안 2024

- **(공시 내용)** ‘기후 진술(the climate statement)’, ‘기후 진술에 대한 참고사항’, ‘진술이 기업법 및 관련 지속 가능성 표준을 준수한다는 이사들의 선언’ 등으로 내용이 구성됨

* KCGS 책임투자본부 ESG데이터팀 선임연구원, hyowon.han@cgs.or.kr

1) NGER법 : 호주의 온실가스·에너지 보고법(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Reporting Act)으로 일정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기업(사업장 포함)을 중심으로 의무를 부과함(“미국의 온실가스배출량 보고의무제도에 대한 검토”, 법제처)

- 기후 진술의 세부 내용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발행한 표준과 유사하게 작성된 호주 회계기준위원회(AASB)의 기후 정보 공개 표준²⁾에 따라 이루어질 예정임
 - ‘기후 진술’에는 ‘기후와 관련된 실질적인 재정적 위험 및 기회’, ‘Scope 1, 2, 3³⁾ 배출량’을 포함한 기후와 관련된 모든 지표 및 목표, ‘지표 및 목표와 관련된 기업의 거버넌스, 전략 또는 위험 관리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됨
 - Scope 3 배출량 공시는 두 번째 보고 연도부터 의무화되며 고객이나 공급업체가 쉽게 산출할 수 없는 데이터에 대한 보고는 제외할 수 있음
 - Scope 3 배출량 정보는 최대 12개월 이전의 보고 연도의 자료를 포함할 수 있으며, 전년도에 다른 기업이 공시한 정보를 사용할 수도 있음
 - 보고서 사용자가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업의 실질적인 위험과 기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해야 하며 ‘기후 변화 리스크(이행리스크) 대응 관련 위험과 기회’, ‘기후 변화의 잠재적 영향(물리적리스크)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고려사항을 포함해야 함
- **(면책 규정)** 지속 가능성 보고서의 불확실한 측면(Scope 3 배출량, 시나리오 분석 등)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후 첫 3년, 기타 미래 예측과 관련된 진술은 제도 도입 후 12개월간 기업이 소송의 위험 없이 새로운 보고 기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면책 규정이 적용됨
- 다만, 보고서상의 진술이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보고 기관에 추가 정보나 시정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형사 소송 및 ASIC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감사 및 인증)** 지속 가능성 보고서는 감사 및 인증 기준 위원회(AUASB)에서 통과한 표준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함
 - AUASB가 지난 3월 20일에 발표한 협의 문서⁴⁾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은 2024년 7월 Scope 1, 2 배출량에 대한 ‘제한적 확신 수준’의 검증으로 시작하여 2030년 7월에는 Scope 1, 2, 3 배출량 전체에 대한 ‘합리적 확신 수준’의 검증으로 전환될 예정임⁵⁾
- **(기타 주요내용)** 보고서 진술 내용의 작성 방법 및 가정을 포함하여 서면 기록을 7년간 보관해야 하며, 지속 가능성 보고서는 ASIC에 제출된 날짜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2) 호주 회계기준위원회(AASB) 표준은 2024년 3분기에 확정될 예정(https://aasb.gov.au/media/ub0flllys/04-1_sp_sr_revprojec ttimelines_m202_pp.pdf)

3) Scope 3 배출량 공시의 경우 1년의 공시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두 번째 보고 연도(second reporting year)부터 의무적으로 공시

4) 기후 및 기타 지속 가능성 정보에 대한 보증에 관한 AUASB 협의 문서(<https://auasb.gov.au/news/auasb-consultation-paper-on-assurance-over-climate-and-other-sustainability-information/>)

5) 제한적 확신 수준은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정도의 인증’을 의미하며, 합리적 확신 수준은 ‘재무감사에 준한 수준의 인증으로, 제한적 검증보다 강화된 긍정적 의사 표시 형태의 인증임 (출처 : 삼일회계법인 ESG 인증 관련 홈페이지(<https://www.samilesg.com/disclosure/certificationView>))

2. 영국 재무부 ESG 평가기관 규제 입법 예정 발표

김수연*

- 영국 Reeves 재무부 장관은 지난 8월 8일 내년 중 ESG 평가기관에 대한 규제를 입법하겠다고 밝힘
 - 본 입법을 통해 ESG 평가방법론의 투명성과 평가기관의 이해상충 이슈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여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 영국 금융감독청(FCA)에서 입법 초안을 작성하며, 해당 입법을 통해 ESG 평가기관을 감독할 예정임
 - 자세한 입법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글로벌 정합성을 위하여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ESG 평가기관 규제 권고안과 유사한 방향으로 작성될 예정임
- 영국은 지난 2021년부터 ESG 평가기관에 대한 규제 도입에 착수함
 - 2022년 6월, 영국 금융감독청(FCA)에서 ESG 데이터 제공자 및 평가기관 규제에 대한 의견수렴에 따른 피드백(Feedback Statement)을 발표함
 - 2023년 3월, 영국 재무부에서 ESG 평가기관으로의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감독대상 확대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Consultation)를 개시함
 - 2023년 12월,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에서 ESG 데이터 제공자 및 평가기관을 위한 자율적 행동규범¹⁾을 발표함

〈표 1〉 ESG 평가 및 데이터 제공자를 위한 행동규범 주요 내용

대원칙	세부내용
거버넌스	행동규범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권고
품질관리	ESG 평가등급 및 데이터의 품질 관리 정책 및 절차 수립 권고
이해상충	이해상충 및 외부 간섭에 대한 독립성 제고 절차 수립 권고
투명성	ESG 평가등급 및 데이터에 관한 방법론 공개 권고
비밀유지	취득한 비공개 정보에 대한 보안 절차 수립 권고
소통	평가 및 데이터 수집 과정 중 평가대상기업과의 효율적인 소통 권고

출처: ICMA Code of Conduct for ESG Ratings and Data Products Providers (2023) 재구성

- 해당 행동규범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권고안을 반영하였음을 밝힘
- 2024년 3월, 2024 예산안을 통해 ESG 평가기관 규제권 편입을 시사함
- 2024년 8월, 2025년 중 ESG 평가기관 규제안 입법 추진계획 예정을 발표함

* KCGS ESG 평가실 김수연 연구원, sykim@cgs.or.kr

1) <https://www.icmagroup.org/assets/DRWG-Code-of-Conduct-for-ESG-Ratings-and-Data-Products-Providers-v3.pdf>

- 유럽연합(EU) 및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지난 2021년 이래로 ESG 평가기관에 대한 규제 도입에 착수하여 의무적 성격의 규제 입법을 완료함
- 2021년 11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서 ESG 평가기관 및 데이터 제공자에 대한 규제 권고안²⁾을 발표함

〈표 2〉 IOSCO ESG 평가기관 및 데이터 제공자에 대한 규제 권고안 주요 내용

권고안	세부내용
권고 1	ESG 평가기관에 대한 당국의 감독
권고 2	평가 시 공시정보 활용 권고
권고 3,4	이해상충 방지 및 독립성 제고
권고 5	ESG 평가방법론 및 절차에 대한 공개
권고 6	ESG 평가 중 취득한 비공개 정보에 대한 기밀 유지
권고 8,9	정보수집절차 개선 및 소통 강화

출처: IOSCO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Ratings and Data Products Providers Final Report(2023) 재구성

- 2023년 6월, 유럽연합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유럽연합(EU) 내 ESG 평가활동 규제안을 제시함
- 2024년 2월, 유럽연합 의회 및 위원회(The Council of the EU and the European Parliament)에서 잠정적인 합의(a provisional agreement)³⁾에 도달함
- 2024년 4월, 유럽연합 의회에서 의무적 규제 성격의 ESG 평가기관 규제 입법⁴⁾을 채택함
 - ESG 평가기관에 대한 유럽증권시장청(ESMA)의 승인 및 감독
 - 잠재적 이해상충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조직적 요건 설정 및 평가활동과 사업의 분리
 - ESG 평가방법론의 공개(ESMA의 공시사항 규정 예정)

〈표 3〉 EU 채택안 주요 내용

조항	세부내용
Article 4	ESG 평가기관에 대한 유럽증권시장청(ESMA)의 승인 및 감독
Article 16	평가활동과 사업의 분리(평가기관의 컨설팅, 신용평가 서비스 등 금지)
Article 23	ESG 평가방법론의 공개(ESMA의 공시사항 규정 예정)

출처: European Parliament legislative resolution of 24 April 2024 재구성

2) <https://www.iosco.org/library/pubdocs/pdf/IOSCOPD690.pdf>

3)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4/02/05/environmental-social-and-governance-esg-ratings-council-and-parliament-reach-agreement/>

4) 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TA-9-2024-0347_EN.html

- 한국은 ESG 평가기관 가이드스를 제정함
 - 2023년 5월, 금융위원회는 자율규제 성격의 ESG 평가기관 가이드스⁵⁾를 발표함
 - 내부통제체제 구축, 원천데이터 수집 및 비공개정보 관리, 평가체계 공개, 이해상충 관리, 평가대상기업과의 관계에 대해 규정함
 - 자율규제로 운영한 뒤 법제화 검토 예정임
 - 2023년 12월, 금융위원회는 ESG 평가기관 가이드스 이행현황을 점검하여 발표함
 - 국내 ESG 평가기관 3사(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 모두 가이드스를 준수하고 있으나 이행수준에 차이는 있음

- ESG 평가기관에 대한 규제가 전세계적으로 고도화되는 추세를 보일 예정임
 - 2021년 11월 IOSCO의 ESG 평가기관 및 데이터 제공자에 대한 규제 권고안 발표를 시작으로 EU 및 영국 뿐만 아니라 일본, 싱가포르 등 전 세계에서 ESG 평가기관에 대한 자율적 규제 수준의 행동강령을 발표하고 있음
 - 비교적 빠른 도입 속도를 보여준 EU 및 영국이 자율적 규제를 의무적 규제 수준으로 발전시켜 가며 후발 도입 국가에 대해 규제 고도화의 방향성을 제시함
 - 한국 또한 의무적 규제로의 발전을 염두에 둔 자율적 성격의 가이드스를 발표하였으며, 차후 법제화 검토를 통해 전 세계적인 ESG 평가기관 규제 고도화에 합류할 것으로 보임

5) <https://www.fsc.go.kr/no010101/80037?srchCtgr=&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